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

윤 동 윤 (체신부 장관)

최근 정보통신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부심하고 있다. 도고 한국통신수련관의 전문가토론회, 중소기업회관의 공청회등을 통해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3일 윤동윤 체신부 장관은 21세기 경영인클럽 사무국에서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편집자주-

정보통신 환경변화

정보통신의 중요성 부각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은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부의 원천으로 부상함
 - 21세기를 이끌어갈 첨단기술의 80%이상이 정보통신관련 기술로서 2000년대 주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 에너지 절약형, 고부가가치, 저공해산업으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적합
- 정보통신산업은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경제구조를 고도화함
 - 전·후방산업 관련효과가 지대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 기술력에 기초한 경쟁우위 확보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정보통신망은 21세기 정보사회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기반구조임

- '70~80년대에는 물류유통망이 경제성장에 기여 하였으나, '90년대 이후 부터는 정보유통망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 가정과 직장, 사회의 모든 곳에서 그리고 의료,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의 진전에 필수적인 기반구조
- ◇정보통신산업은 성장유망산업이고 경제기반의 파급효과가 지대한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의 요체임

기술혁신 가속화

- 통신과 컴퓨터기술 발달로 전송수단이 다원화되고 대용량화함
 - 초고주파대역, 이용기술 발달 및 무선통신기기의 경박단소화 등 무선기술 발달로 무선통신이용이 활성화되고
 - 저궤도위성(LEO)과 같은 위성기술 발전으로 통신·방송의 복합 활용이 가능한 위성망

- 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 광통신기술과 교환(ATM)기술 발달로 음성·데이터·영상정보의 동시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등장
- 서비스 융합 및 미디어간 상대사업영역 진입이 이루어짐
 - 개인용휴대통신(PCS) 등으로 유·무선경계 영역적 서비스가 출현하고
 - 주문형영상서비스(VOD), 양방향 CATV 등 통신과 방송 융합으로 통신·방송의 경계영역적 서비스가 등장

◇사업의 국경개념이 퇴색되고 서비스별 사업자구분 곤란

◇전송로의 융합과 사업자 융합에 따라 통신·방송의 규제기관 일원화 추세

국제화·개방화

-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화·개방화·자유화가 가속되고 있어 통신시장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음
- 선진국의 통신시장개방이 진전되어
 -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일본의 휴대전화시장이 추가 개방되고
 - 미국과 유럽연합(EU)간 통신장비조달시장 상호개방이 논의중임
- 국내통신시장도 대외개방 확대 추세에 있어
 - 부가통신 서비스시장은 전면 개방되었고
 - 통신장비조달시장은 한·미통신협상을 통해 미국과 상호개방에 합의한 데 이어 EU와도 상호시장개방 문제를 논의중임

- 기본통신시장에도 자유화·개방화의 파고가 밀어닥칠 전망이다
 - '93년말 타결된 UR협정에 따라 기본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증대하기 위한 다자간협상이 '94.5월부터 2년을 기한으로 개시되어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21개국이 협상에 참여중이며
 - 협상참가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기본통신분야를 자유화하여 우리나라 주요개방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구조개편의 필요성

현행 사업구조

- 설비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기간/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자를 다시 서비스의 기술적, 지역적 제한여부에 따라 일반/특정사업자로 세분
 - 일반사업자와 특정사업자는 상호 상대영역 사업진입이 금지됨
- 독점 또는 제한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시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규제
- 일반통신사업은 제한적인 경쟁도입
 - 시내·시외전화는 통신공사가 독점 유지
 - 국제전화 및 전용회선 시장은 복점경쟁 상태
- 특정정보사업은 서비스별로 경쟁체제 구축
 - 이동전화는 한국이동통신(주)외에 신규사업허가를 추진중이고
 - 무선호출은 전국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주)와 10개 지역사업자가 각 지역별 복·과점음

유지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은 전반에 걸쳐 다수 사업자에 의한 전면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문제점

- 사업자 분류방식의 경직성
 - 일반/특정/부가통신으로 사업자를 세분하고 사업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 사업자들이 서비스간에 상호 융합화하는 통신기술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신규서비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체
 - 신규서비스가 어떤 사업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 사업자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고
 - 엄격한 진입규제와 복잡한 허가절차로 신규서비스의 조기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음
- 통신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
 - 사업자 수 및 사업영역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 유입에 한계를 노정하고
 - 일부 경쟁이 도입된 분야에 있어서도 요금 등의 행정규제가 상존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외개방에 대한 대비 미흡
 - 대외개방 압력이 기본통신을 포함한 전 방위에 걸쳐 확대돼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 국내 통신시장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시장이 독점이거나 제한적 경쟁으로 인해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형편임

구조개편의 기본방침

구조개편의 목표

- 통신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통신기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반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도록 함

정책방향

- 사업영역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다각화와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 경쟁의 도입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신시장에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며
-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경쟁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일 제고

정책수단

- 통신사업자 분류방침과 지분구조 개편
- 시장진입, 요금 등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 기본통신시장 경쟁확대
- 신규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방향제시

구조개편의 주요내용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특정 세분제도를 폐지하여
 - 능력있는 사업자의 사업 다각화 및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 실제사업영역은 사업자별 허가서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규제
- 통신사업자의 영역구분방침을 개선하여

-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사업자의 자격과 이용조건 등을 규제하는 규제서비스만을 법령에 열거하고(전화, 전용회선, 이동전화, 무선호출, PCS, TRS, 회선재판매 등)

- 이에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서비스는 모두 제공토록 허용

○진입조건을 완화하여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현행 지정/허가를 허가로 통일하고

- 부가통신사업자는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분 류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정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한 사업자
사업영역	규제서비스중 허가받은 사업, 비규제서비스 전부	비규제서비스 전부
진입조건	허 가	신 고

기간통신사업자 지분구조 조정

○일반/특정사업자 구분폐지에 따라 지분한도를 현행 특정통신사업자 수준으로 통일함

○다만, 전화(시내·시외·국제)사업은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한도를 유지토록 함

- 순수한 시장원리 면에서 지분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 대주주의 지분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정서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방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은 서비스의 수직결합에

따른 폐해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기 현행 한도를 유지함

○민간의 창의와 활력에 의한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지분한도는 현행 한도를 유지토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간 제휴·경영합리와 등을 위해 상호출자를 허용

구 분	현 행	개 정
대 주 주	일반 : 10%, 특정 : 1/3	1/3(전화사업은 10%)
외 국 인	일반 : 금지, 특정 : 1/3	1/3(전화사업은 금지)
정부투자기관	10%	10%
설비제조업체	일반 : 3%, 특정 : 10%	10%(전화사업은 3%)
상 호 출 자	금지	허용(채신부 승인)

* 외국인, 정부투자기관, 설비제조업체는 대주주 불허

통신사업 규제완화

요금 및 규제완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모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요금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실질적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

- 서비스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규제를 하되

- 경쟁여건이 조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기간통신사업자	지배적사업자	승 인
	비지배적사업자	신고(채신부장관 시정명령가능)
부 가 통 신 사 업 자		자유화

※ 「물가인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필요

○법령으로 사업자수를 직접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경직된 진입규제제도를 철폐하고

- 사업수행상의 각종 행정규제도 사업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토록 함

※ 예시

- 중요설비 설치승인의 신속화를 위해 일정시한 경과 시 자동승인 간주제 시행
- 기존설비와 주파수를 이용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용약관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신고로 완화

자가통신설비 이용규제 완화

○검토배경

-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자가통신설비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잉여통신설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통신시장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에게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할 경우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경쟁원칙에 위배되고
-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대부분인 정부투자기관의 본래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되며
- 사업자가 되면 잉여설비 활용을 넘어 대규모 시설의 신규투자가 필요하게 되어 새로운 중복투자 문제를 야기하게 됨

○정책대안

- 따라서 추가적인 투자부담이 과다해 지지 않도록 잉여설비의 활용 범위내에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서비스제공에 관련된 범위내에서 설비설치 승인, 요금인가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

를 준용토록 함

시외전화 경쟁도입

경쟁도입의 필요성

○통신수요의 다양화·고도화 추세에 대처

- 양적인 통신수요의 충족과 더불어 질적 욕구가 확대되고
- 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가 가속화 됨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에 대비

- UR다자간협상에서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제한적 도입장벽의 제거 및 정부규제완화 요구가 주요 쟁점화되고
- 한·미통신협상에서도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장거리·국제통신서비스 참여, 회선재판매 허용, 원가주의 요금정책 등

○기본통신시장의 체질강화가 시급

- 요금과 원가의 현격한 괴리, 기술 및 영업능력의 열세로 인하여 국내시장은 구조적으로 대외개방에 취약하므로
- 진입유인의 제거와 국내사업자의 경쟁력제고가 요구됨

경쟁은 사업자의 효율성 제고에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도입이 바람직하며 기본통신 시장개방 전망을 감안할 때 시외전화의 경쟁도입은 불가피

경쟁을 위한 필수적 선행장치

○요금조정

- 시내전화 부문의 적자를 시외전화 부분에서

보전하는 현재의 요금구조에서 시외부분만의 경쟁은 크림스키밍을 유발하므로

-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여 과다수익을 제거한 후에 경쟁도입

○ 무차별적인 시장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 수요의 타당성 및 설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토록 하고

- 보편적 서비스의무 및 연구개발 출손의무를 부과함

○ 사업자간 적절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사업자 공통의 합리적 합계기준을 확립하고

- 접속료 제도를 통한 시내적자 보전 및 공공재원 확보

전국단위요금제 추진과의 관계

○ 전국단위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국내전화망을 보유하지 못한 신규사업자는 경쟁이 곤란함

○ 따라서 향후 전국단위요금제 시행단계에서는 시외전화경쟁사업자에게 시내전화망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 도입

서비스의 특징

○ 이동전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보행자용 무선 통신서비스로서

- 이동전화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차세대 주력 통신서비스임

○ 유·무선복합기술에 의한 산업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 조속한 국내 기술개발이 중요함

도입방안

○ 사업구역 및 사업자 선정시간

- 시간구역은 전국으로 하여 전국에 이음새 없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 사업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선정하여 사업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유도

○ 초기 사업자 선정기준

- 초기 사업자는 국내의 기술개발 능력의 효율적 집증을 위해 통신망의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가장 유리한 사업자로 선정

맺음말

◇ 국제화·개방화·세계화로 표현되고 있는 오늘날의 냉엄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

◇ 정보통신산업은 그 자체로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동시에 타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전략분야임

◇ 이에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경쟁 확대와 과감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해 정보통신 발전을 도모코자 함

◇ 규제완화를 통하여 통신사업자들이 기술발전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다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쟁을 통하여 국내사업자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임

◇ 체신부장관으로서 이번 통신사업구조개편이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통신이용 편의의 증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반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함